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93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백혜련・이병진・김준혁

이기헌 · 김한규 · 정동영

오세희 • 박홍배 • 문진석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

2제1항, 제37조제1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고객 등"을 "고객, 거래처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		
롱 방지) ① 사업주는 <u>고객 등</u>	롱 방지) ① <u>고객, 거</u>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	<u>래처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u> -		
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			
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			
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			
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	제37조(벌칙) ①		
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			
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			
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	<u> 5천만원</u>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